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한재가복지센터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

- ① 급여 제공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 또는 그 수급자의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2.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급여제공계획 등 급여내용에 대한 알 권리
 - 4.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센터의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및 퇴원 시 그에 대란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될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5.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그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8.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6%